

하동군의회공고 제2026 - 20호

## 제34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집회 철회 공고

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제34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철회함.

- 철회내용 : 하동군의회 제349회 임시회 집회 공고

2026. 6. 11.

하동군의회 의장 강 대 선

